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4조 [전용 보호구 등]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4조(전용 보호구 등) · 조문 원문 전체

사업주는 보호구를 **공동사용** 하여 근로자에게 **질병이 감염될 우려**가 있는 경우 **개인 전용 보호구**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**예방하기 위한 조치**를 하여야 한다.

함께 써서 감염 우려

해당 상황을 먼저 확인

개인 전용 보호구 지급

사업주가 개인별로 지급

감염 예방조치도 함께

구분·적합한 세척·보관의 예

그림과 도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. 실제 작업 시 적용 법령·현장 조건·기구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